

2017. 11. 10(금) - 12(일) **BEXCO**

주 관 YESDEX2017 조직위원회

주 최 대한치과의사협회  
부산·대구·울산·경북·경남 치과의사회

후 원 



■ 전시부스 및 광고 참가신청

VAT 별도

구 분		금 액		신청란
		6/30(금) 까지	7/1(토) 까지	
전시참가비	기본부스	2,000,000원	2,200,000원	Booth
	독립부스	1,750,000원	1,925,000원	Booth
책자광고	표4 (뒷표지)	2,000,000원		면
	표2, 표2대면	1,500,000원		면
	표3, 표3대면	1,000,000원		면

**납부계좌 : 신한 131-000-338145      예금주 : 치과의사회**

- 독립부스(공간만 제공) 신청은 4부스 이상만 가능합니다.
- 구매 패키지 협찬이나 경품 지원시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지에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.

■ 부대시설 신청

VAT 별도

품 목	신청내역	단가(원)	비 고
전화	대	50,000 /대	국내
전기	KW	50,000 /KW	24시간 전기는 별도 문의
급·배수/압축공기	개소	160,000 /개소	
인터넷전용선	PORT	150,000 /PORT	
바코드시스템	개	150,000/개	

**납부계좌 : 대구은행 504-10-136896-7      예금주 : 마이스산업연구원(주)**

■ 신청방법

-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를 지정 계좌로 송금 후 ①참가신청(계약서),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을 YESDEX 2017 사무국에 등기우편, FAX 또는 E-mai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■ 신청업체

회 사 명		대 표 이 사	
주 소			
홈페이지	http://	전 화 번 호	F A X
담 당 자		직 위	
휴대폰번호		E - mail	

20 . . .

신청인

인

YESDEX 2017 사무국

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8번길 3-8 T. 051-469-5704 F. 051-463-5774 E-mail. bda007@bda.or.kr

(주)마이스산업연구원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17 우체국 3층 T. 053-943-1300 F. 053-943-1401 E-mail. cmh3205@hanmail.net

# YESDEX 전시회 참가규정

## 제1조 용어의 정의

1. '전시회'라 함은 YESDEX 2017(2017년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)를 말한다.
2. '전시자'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.
3. '주최자'라 함은 YESDEX 2017 조직위원회를 말한다.

## 제2조 참가신청

1.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YESDEX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정해진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계약금 50%를 납입하여야 하며, 잔금은 정해진 일자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.
3. 전시자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정한 기한 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,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 및 전시참가를 임의 배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은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.

## 제3조 부스위치 배정

1. 주최자는 부스 참가규모, 참가실적, 신청순위, 전시품을 기준으로 부스 배정 및 위치를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.
2. 주최자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할당된 부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제4조 설치 및 철거

1.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 발생 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주최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와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3. 독립부스가 전시 장치물을 설치 할 때는 부스 규모에 상관없이 주변 부스 전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고 해당 부스의 전시장치물에 따라 전시회 동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일정간격을 필수로 확보하여야 한다.
  - \* 전시장치물 설치 기준 : 오픈 규정
  - 전시 장치물의 높이 제한 4m
  - 주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에서 높이 3m까지 면의 1/2 이상 개방
  - 기타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에서 높이 3m까지의 면의 1/3 이상 개방

## 제5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
1.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해야 한다.
2.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배당된 면적 내에 발생하는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이나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3. 전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, 도난, 파손, 안전사고,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, 주최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.

## 제6조 전시장 관리

1.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## 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

1.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2. 단, 불가항력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제8조 양도 및 전대

1.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청부스를 타 업체에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없다.

## 제9조 계약 취소 또는 철회

1. 전시자가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주최자는 즉시 계약을 종결할 권리가 있으며, 계약 종결시 납입한 부스비 및 부대시설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.
2.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없이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, 전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.

## 제10조 보충규정

1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해당 전시장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## 제11조 분쟁해결

1.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.